

2021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2-13 외 2필지(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1.21.~1.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창보건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2-13	관련지번	22-13, 22-14	
	대지면적	5,536.3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준준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,760.72㎡	건폐율	49.87 %	층수 지하 : -2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(주1)
	최고높이	38.74m	용적률	268.87%	연면적 합계 23,266.9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원설계자가 구조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하기 바람 ○ 현장 개설 후 기 시공된 파일에 대해 동재하시험을 통한 시험 성적서를 필히 제출하시고,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및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기 바람 ○ 골조 설계시 적용한 지상3층 전이 PLATE의 슬래브 강성을 명시하여 전이층 하부 보 및 기둥배근의 보강량 산정방법을 심의위원(김현진)에게 검토 받고 결과서를 제출 할 것. ○ 1G33의 경우, 1TG2의 경우 중항부 하부근의 약 2배정도 보강되는 것으로 보아 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, 하중 전달 경로의 안전성에 대한 설계자 의견 제시하고 심의위원(김현진)에게 검토 받고 결과서를 제출 할 것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2-6 외 1필지(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1.21.~1.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대양종합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2-6	관련지번	22-7	
	대지면적	3,068.4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준준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460.66㎡	건폐율	47.60 %	층수 지하 : -2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(주1)
	최고높이	42.55m	용적률	278.48%	연면적 합계 13,601.38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원설계자가 구조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하기 바람 ○ 파일 배치와 관련하여 주변 파일의 내력이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나, 파일에서 하중의 재분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 내력이 부족한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파일 시공이 필요하므로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할 것. ○ 3층 전이보 주근 UHD29의 이음부 시공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, 커플러 이음시 도면에 이음방법을 명기할 것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서구 청라동 95-3(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1.21.~1.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정어수파트너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-3				
	지 번	95-3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,120.4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중심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047.95㎡	건폐율	49.42%	층수 지하 : -4 / 지상 : 19층
	주 용 도	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(주1)
	최고높이	59.85m	용적률	819.71%	연면적 합계 23,375.71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원설계자가 구조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하기 바람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